
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체육시설인 충청북도체육회관 및 충북스포츠훈련관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체육시설(충청북도체육회관 및 충북스포츠훈련관)관리 및 위탁운영 규정을 정함(안 제4조)
- 체육시설 변경·임대 또는 체육시설을 사용·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징수시 도지사 승인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위탁 운영규정, 해지 등을 정함(안 제6조~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

- 기부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

- 다만, 수탁기관은 특정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안 제4조제1항중 "충청북도체육회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"를"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"로 하고,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제2항중 "위·수탁 기간은"을 "위탁 기간은"으로 하며, 조문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제3항중 "체육회장은"을"수탁자는"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,

또한, 기준일을 명확히 하도록, 안 제9조제2항중 "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"를 "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"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